

#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3662
----------	------

제안일자 : 2026. 4. 23.  
제안자 : 주택공간위원장

## 1. 대안의 제안경위

진명	의안번호	발의자 (제출자)	회부일	회의정보	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3640	고광민 의원	'26.4.7.	상정 · 심사	제335회 임시회 제1차 주택공간위원회('26.4.23.)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3602	김태수 의원	'26.4.7.	상정 · 심사	제335회 임시회 제1차 주택공간위원회('26.4.23.)

- 제335회 임시회 제1차 주택공간위원회(2026.4.23.)는 위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,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·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## 2. 대안의 제안이유

-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도 전자서명동의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의서 징구의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함
-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시, 준공까지 4년 이상 소요되어 구역 내 세입자로부터 바로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, 가로주택정비사업,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철거세입자에게 재개발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해당 사업 철거세입자의 주거안정 도모 기대

## 3. 대안의 주요내용

- 가. 정비계획의 입안요청과 입안제안시 전자서명동의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, 본인확인 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의2, 안 제10조)
- 나.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에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내 세입자를 추가하고, 공급순위를 정함(안 제46조)

##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제3항 중 “동의서”를 “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한다. 이하 같다)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⑧ 제3항에 따른 전자서명동의서의 본인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3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방법을 준용한다.

제10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동의는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.

제10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동의서의 본인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3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방법을 준용한다.

제4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 거주하던 자로서, 「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」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가진 세입자

제46조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제7순위: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 전자서명동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9조의2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의2(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정비계획의 입안요청을 위한 동의를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동의를 받기 전에 구역계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며, 구청장이 번호 부여한 <u>동의서</u>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.</p> <p>④ ~ ⑦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제10조(정비계획의 입안 제안) ①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여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</p>	<p>제9조의2(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한다. 이하 같다)---</u></p> <p>④ ~ 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⑧ <u>제3항에 따른 전자서명동의서의 본인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3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방법을 준용한다.</u></p> <p>제10조(정비계획의 입안 제안) ① 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

② (생략)

③ 영 제69조제1항 별표 3 제2호  
나목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임대  
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 
공급한다.

1. ~ 6. (생략)

<신설>

④ · ⑤ (생략)

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7. 제7순위: 제1항제7호에 해당하  
는 자

④ · ⑤ (현행과 같음)